

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5. 11. .

제 안 자 : 국방위원장

수정이유

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5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, 이미 만료되어 부칙 개정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수정주요내용

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, 위원회는 2032년 6월 30일까지 존속토록 함(안 부칙 제2조 신설).

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
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법률 제16029호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
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중 “2032년 6월
30일”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“2025년 6월 30일”로 한다.

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,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한)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
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203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법률 제16029호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2조(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한) ① (생략) ② 위원회는 <u>2025년 6월 30일까지</u> 존속한다.	(현행과 같음) 제2조(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<u>2032년 6월 30일</u>----- ----. 부칙 <u>이 법은 공포한 날</u> <u>부터 시행한다.</u>	(개정안과 같음) 제2조(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한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-----<u>2025년 6월 30일</u>----- ----. 부칙 <u>제1조(시행일) 이 법</u> <u>은 공포 후 3개월</u> <u>이 경과한 날부터</u> <u>시행한다.</u> <u>제2조(위원회의 구성</u> <u>및 존속기한) ① 국</u> <u>방부장관은 이 법</u> <u>시행 이후 1개월</u> <u>이내에 위원회를</u> <u>구성하여야 한다.</u>

		<u>② 위원회는 2032</u> <u>년 6월 30일까지</u> <u>준속한다.</u>
--	--	---

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
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임종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93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2. 6.

발 의 자 : 임종득 · 유용원 · 인요한
강선영 · 강승규 · 권영진
김기웅 · 강명구 · 김예지
권성동 · 박대출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
등상사 · 중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
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그런데 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기간이 2021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
되어 있어 지급신청 기간은 이미 만료되었으나, 아직 퇴직급여금 지급
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있어 지급신청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
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간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여
지급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구제하려는 것임(안 제6조
제2항 등).

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
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
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2021년”을 “2028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한)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
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203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퇴직급여금 지급신청) ① (생 략)	제6조(퇴직급여금 지급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은 <u>2021년</u> 6월 30일까 지 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<u>2028년</u> ----- -----.